

## ① 개정개요

※ 국세 일치

개정 전		개정 후	
증여자	취득자(수증자)	증여자	취득자(수증자)
1세대 1주택자	배우자	1세대 1주택자	배우자
	직계존속 (신설)		직계존속
	직계비속 (신설)		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
			직계비속
			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

## □ 개정내용

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에 ①직계 존속과 혼인중의 배우자 및 ②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추가
- ※ (배우자의 범위) 사실혼 및 생계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상 이혼한 경우 제외

## 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(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